플로리다 주 법안

사이버 성희롱에 대한 법안

섹션1. 섹션 784.049, 플로리다 법안은

784.049 사이버 성희롱

(1) 입법부는 다음과 같이 본다:

(a) 사전동의 하에 찍힌 노골적 성적 이미지는 이미지가 사적으로 남을 것 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담고있다고 본다.

(b) 합법적 목적 없이 이미지에 드러난 개인의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해 이미지에 드러난 개인의 동의를 받지않은 노골적인 사진들을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일이 보편화 되고 있다.

(c) 인터넷 웹사이트에 그러한 이미지들이 게재될 경우 해당 이미지들은 전세계의 가늠할 수 없는 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되며, 손쉽게 재생산-공유될 수 있다.

(d) 그러한 이미지의 인터넷 게재는 이미지에 드러난 개인의 사적 나체 혹은 사적 성행위를 박제, 영구적 기록물로 남긴다.

(e) 인터넷에 떠도는 그러한 이미지의 존재는 해당 이미지에 드러난 개인에게 현저한 심리적 위해를 야기한다.

(f) 해당 이미지에 드러난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보호 하지 않을 수 없다.

(2) 본 섹션에 사용된 대로의 용어의 정의

(a)”이미지”는 사진, 그림, 영상, 영화, 비디오 혹은 초상 표현물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b)”개인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는 s817.568에 적힌 의미와 동일하다.

(c) “사이버 성희롱” 은 개인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를 담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이미지에 드러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합법적 목적 없이 이미지에 드러난 개인에게 감정적 스트레스를 유발 할 목적으로 인터넷 웹사이트로 유포 하는 일을 말한다.

(d)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는 섹션 847.001에서 정의된 바 와 같이 나체가 드러난 모든 이미지를 포함하며 동 섹션에서 정의된 바 와 같이 성적 행위 중인 사람이 드러난 이미지를 뜻한다.

(3) (a)(b)문단에서 제공한 예를 제외하고 고의적으로 또 악의를 가지고 타인을 사이버 성희롱 하는 일은 1급 경범죄로 분류 되며 섹션775.082 또는 775.083 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b) 사이버 성희롱의 전과가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 이 있는 이가 두번째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3급 중범죄로 분류하며 섹션775.082, 775.083, 또는 775.084 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4)(a) 법 집행자는 이 섹션을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는 자를 영장 없이 구속 할 수 있다.

(b) 진술서가 나오면 본 섹션에 대한 위반을 더 깊이 조사 하기 위해 수색영장이 발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적 주거지에 대한 영장 (가택 수색영장) 을 포함한다.

(5) 피해자는 본 섹션의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모든 적절한 안심을 얻기 위해, 위반의 방지 혹은 위반에의 치료를 위한 시민행동을 개시 할 수 있다.

(a) 명령적 안도

(b) $5000을 포함하는 금전적 손해 또는 본 법안의 위반이 야기한 피해. (whichever is greater)

(c)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6) 이 섹션을 위반한 범죄자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타인의 메세지 혹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을 유통, 보관, 또는 은닉하는

47U.S.C.섹션.230(f)에서 정의 된 대로 인터렉티브 컴퓨터 서비스 의 제공자, 47.U.S.C.섹션 153 에서 정의 된 대로 정보 서비스 또는 섹션 202.11에서 정의 된 대로 통신 서비스; 상업 모바일 라디오 서비스 혹은 기타 텔레커뮤니케이션 또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내용물

(b)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그녀 혹은 그 의 업무와 관련해서 게재하는,

섹션 930.10에 정의 된 대로의 법 집행인 또는 지역, 주, 연방, 혹은 군법 집행 대리인.

(7) 플로리다 주 내에서 본 섹션의 위반은 위법적 요소가 있는 모든 행동, 또는 위법적 행위로부터 이미지에 드러난 개인이 받는 모든 피해

섹션2 서브섹션(16) 은 플로리다 주법 섹션 901.15에 추가되었다 :

901.15 영장 없는 체포가 법적으로 정당할 때 법 집행인은 특정인을 영장 없이 체포 할 수 있다:

(16) 특정인이 섹션 784.049 에 기술된 바 와 같은 사이버성희롱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있을 법 한 근거가 있는 경우

섹션3. 플로리다 주법 섹션933.18의 서브섹션 (9) 와 (10) 는 수정되었으며 서브섹션(11) 또한 추가되었다

933.18 사적 거주지 수색영장의 발부는 가능하나 본 법안 또는 플로리다 주 법안 내에서 사적 거주지 수색영장은 아래의 항목과 같지 않은 이상 발부되지 아니한다.

(9) 사적 거주지가 불법적 판매, 소유, 또는 야생동물의 구매, 해산물, 불법 포획한 민물고기 등의 보관을 위해 이용되고 있을 경우

(10) 챕터828 에 기술 된 바 와 같이 동물학대방지법과 관련이 있거나 동물 학대방지법을 어겼을 경우

(11) 섹션784.049의 위반인 사이버 성희롱의 수단, 증거가 보관 되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129-142 아동에 관한 조항 생략

섹션4. 본 법안은 2015년 10월1일자로 그 효력을 띈다.